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 의 장

제49호 2022. 12. 21.(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2-395호	광양 상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2-39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2-399호	광양 상황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8
광양시 고시 제2022-40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0
광양시 고시 제2022-403호	광양시 광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12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2470호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광양시 공고 제2022-2485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23

회 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제2022-437호(2022. 9. 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광양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12. 21.

광 양 시 장

1. 광양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
2. 광양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양시청 택지과(061-797-2930)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294	-	57,294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48,992	48,992	85.5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8,813	8,813	15.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0,179	40,179	70.1	
녹지 지역	소 계	57,294	감) 48,992	8,302	14.5	
	자연녹지지역	57,294	감) 48,992	8,302	14.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양시 성황동 산56-2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8,813	200 이하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	광양시 성황동 산56-2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0,179	250 이하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2.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2	성 황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양시 성황동 산56-2번지 일원	57,294	-	57,29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32	광양시 성황동 산56-2번지 일원	57,294	자연 친화적 주택 공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있는 민간아파트 공급으로 인구유입 도모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성황 도시개발구역	광양시 성황동 산56-2번지 일원	57,294	-	57,294	-

○ 도시개발사업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	광양시 성황동 산56-2번지 일원	57,294	○ 자연 친화적 주택 공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있는 민간아파트 공급으로 인구유입 도모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328	3,988	1	188	1,950	1	97	1,781	1	43	257
중로	1	97	1,781	-	-	-	1	97	1,781	-	-	-
소로	2	231	2,207	1	188	1,950	-	-	-	1	43	257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86	18	국지 도로	97	성 황동 산56-2일원	성 황동 산56-2일원	일반 도로	성 황동	-	
신설	소로	1	255	10	국지 도로	188	성 황동 산56-2일원	성 황동 산56-2일원	일반 도로	성 황동	-	
신설	소로	3	684	6	특수 도로	43	성 황동 산56-2일원	중로2-68	특수 도로	성 황동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중로2-186	○ 노선 신설 ○ 폭원 : 18m, 연장 : 97m	○ 성황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노선 신설
신설	소로1-255	○ 노선 신설 ○ 폭원 : 10m, 연장 : 188m	○ 성황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노선 신설
신설	소로3-684	○ 노선 신설 ○ 폭원 : 6m, 연장 : 43m	○ 성황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노선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7	주차장	성황동 산56-2 일원	-	증) 691	691	-	노외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7	노외주차장	- 신설 - 위치 : 성황동 산56-2 일원 - 면적 : 691㎡	이용객 편의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3,677	3,677		
신설	188	성황 공원1	소공원	성황동 산58-8 일원	-	증)3,506	3,506	-	
신설	189	성황 공원2	소공원	성황동 산56-2 일원	-	증)171	171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88	성황 공원1	- 소공원 신설 - 위치 : 성황동 산58-8 일원 - 면적 : 3,506㎡	주민 및 이용객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신설
189	성황 공원2	- 소공원 신설 - 위치 : 성황동 산56-2 일원 - 면적 : 171㎡	주민 및 이용객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신설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증) 3,936	3,936		
신설	150	녹지	경관녹지	성황동 산56-2 일원	-	증) 2,987	2,987	-	
신설	151	녹지	경관녹지	성황동 산56-2 일원	-	증) 171	171	-	
신설	152	녹지	경관녹지	성황동 산56-13 일원	-	증) 778	778	-	가스공급 설비(25㎡) 중복결정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0	녹지	- 신설 - 위치 : 성황동 산56-2 일원 - 면적 : 2,987㎡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사면발생 및 주변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녹지 결정
151	녹지	- 신설 - 위치 : 성황동 산56-2 일원 - 면적 : 171㎡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사면발생 및 주변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녹지 결정
152	녹지	- 신설 - 위치 : 성황동 산56-13 일원 - 면적 : 778㎡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사면발생 및 주변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녹지 결정

3) 유통 및 공급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	가스 공급설비	성황동 산56-2 일원	-	증) 25	25	-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가스공급 설비	- 신설 - 위치 : 성황동 산56-2 일원 - 면적 : 25㎡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녹지 내 가스공급설비 중복 결정함

광양시 고시 제 2022 - 398 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1.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3길 20 (광영동) 외 5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373,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2.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6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1069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3길 20(광영동)	20221221	20200603	사업명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552-7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도선1길 36	20221221	20180523	도선길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27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해창길 8-29	2022122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41-7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관동길 23-10	2022122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815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다사길 39-26	2022122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74-5, 1674-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예구3길 12	2022122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고시 제2022-399호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534호(2022. 12. 01.)와 관련, 광양시 성황동 산67-1번지 일원의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1.

광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신설)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7	성황1지구 도시개발구역	광양시 성황동 산67-1번지 일원	-	증)47,911	47,911	전라남도 고시 제2022-534호 (2022.12.01.)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7	광양시 성황동 산67-1번지 일원	47,911	○ 주변개발에 따른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명품아파트 공급으로 인구유입 유도 및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신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32	성황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광양시 성황동 산67-1 일원	-	증)47,911	47,911	전라남도 고시 제2022-534호 (2022.12.01.)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m ²)	결 정 사 유
32	광양시 성황동 산67-1번지 일원	47,911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2.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양시청 택지과(☎061-797-2930)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광양시 고시 제 2022-40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1	2022. 12. 21.	건축물대장 말소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1.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1	2022. 12. 2.	2022. 12. 21.	건축물대장 말소

광양시 고시 제2022 - 403호

광양시 광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광양시 광영동 789-3번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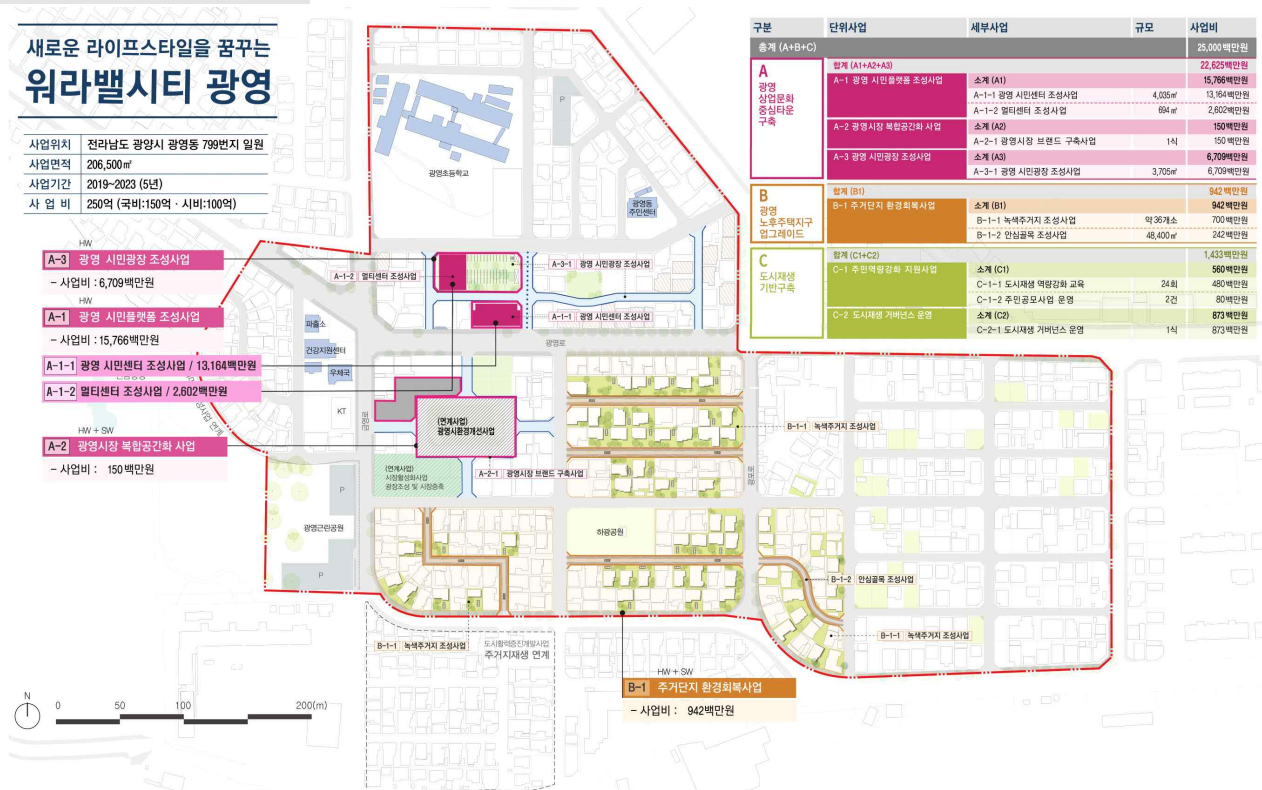
2022년 12월 21일

광양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변경)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	중심시가지형	491.32	2019년~2023년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위치	광양시 광영동 789-3번지 일원	사업면적	206,500㎡
사업 필요성	광영동은 19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여가나 문화 활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공기능을 확충하고 주거 기반을 정비하여 광영동의 중심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효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중심성을 강화하고 생활기능 재정비를 위한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상세 ③ 참조
재원조달방안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상세 ⑤ 참조

활성화계획도(변경)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

비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
목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중심성 강화/생활기능 재정비를 위한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지속 가능한 공동체 역량 증진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내용
합계 (①+②+③)		491.32	-
소 계 ①		250.00	-
마중물 사업	광영 시민센터 조성사업	131.64	도서관, 돌봄교실, 마을카페 시민라운지 등
	멀티센터 조성사업	26.02	다목적 공연장
	광영시장 브랜드 구축사업	1.50	광영시장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활성화프로그램
	광영 시민광장 조성사업	67.09	주차장 및 시민광장 조성
	녹색주거지 조성사업	7.00	녹색주택, 녹색주차, 동행사업
	안심골목 조성사업	2.42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4.80	도시재생대학, 주민리더발굴, 마을축제 지원
	주민공모사업 운영	0.80	마을자산 기록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8.73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협의체 지원 등
소 계 ②		113.80	-
지자체 사업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	75.50	광영상설시장 증축
	광영시장환경개선사업	26.80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안심골목 조성사업	10.00	골목 바닥정비
	시민광장 인근 도로 정비사업	1.50	시민광장 인근 바닥정비
소 계 ③		127.17	
부처 연계 사업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3.57	축구테마센터, 테마가로조성 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60.00	축구테마센터 연결도로 확포장, 주차장 조성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3.60	소공원 정비, 바닥정비공사
민간 투자 사업	소 계 ③	0.35	
	녹색주거지 조성사업	0.35	녹색주거지 조성사업 자부담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재원 조달계획(변경)

(단위:억 원)

사업 유형	사업 번호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협업	지자체 사업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91.32	150.00	0.00	100.00	127.17	113.80	0.00	0.00	0.35
마중물 사업	소계		250.00	15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A-1	광영 시민센터 조성사업	131.64	80.92		50.72					
	A-1-2	멀티센터 조성사업	26.02	15.97		10.05					
	A-2	광영시장 브랜드 구축사업	1.50	0.92		0.58					
	A-3-1	광영 시민광장 조성사업	67.09	41.19		25.90					
	B-1-1	녹색주거지 조성사업	7.00	4.29		2.71					
	B-1-2	안심골목 조성사업	2.42	1.48		0.94					
	C-1-1	도시재생역량강화교육	4.80	2.94		1.86					
	C-1-2	주민공모사업 운영	0.80	0.49		0.31					
	C-2-1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8.73	1.80		6.93					
지자체 사업	소계		113.80	0.00	0.00	0.00	0.00	113.80	0.00	0.00	0.00
	1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	75.50					75.50			
	2	광영시장환경개선사업	26.80					26.80			
	3	안심골목 조성사업	10.00					10.00			
	4	시민광장 인근 도로 정비사업	1.50	-		-		1.50			
부처 연계 사업	소계		127.17	0.00	0.00	0.00	127.17	0.00	0.00	0.00	0.00
	1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3.57				63.57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60.00				60.00				
	3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3.60				3.60				
민간 투자 사업	소계		0.3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5
	1	녹색주거지 조성사업	0.35								0.35

☐5 주요변경사항

- 광영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지자체사업으로 전환
- 세부사업 실사업비 조정

☐6 도시재생관련 서류 열람

-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2850)

광양시 공고 제2022 - 2470호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조례로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및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여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코자 함

2. 관계법령

-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2022.08.04.)」

3. 주요내용

- 조례로 정하는 해체허가 대상 신설(안 제8조의2)
-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2. 12. 21. ~ 2023. 1. 10.(20일간)

6. 의견제출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건축과(우 57785)

- 전 화 : 061-797-2475

- 팩 스 : 061-797-2590

- 전자우편 : leebrokmc@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체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와 연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u> <u>1. 버스정류장</u> <u>2. 횡단보도</u> <u>3. 육교</u> <u>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u> <u>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u> <u>2.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체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와 연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신 설>

제9조의2(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9.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제안이유

-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1,176명→1,181명, 5명 증)

3. 주요내용

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개정
(안 제2조 및 제2조 제1호)

- 정원 총 수 : 현행 1,176명, 개정 1,181명(5명 증원)
- 집행기관 정원 : 현행 1,151명, 개정 1,152명(1명 증원)
- 의회사무기구 정원 : 현행 25명, 개정 29명(4명 증원)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별표3)

(단위:명)

구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 문 경력관			
개정안	1,181	1	1,145	1	10	63	1,070	1	1	5	29
현 행	1,176	1	1,140	1	10	63	1,065	1	1	5	29
증감분	5	-	5	-	-	-	5	-	-	-	-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2. 12. 19.(월) ~ 12. 21.(수)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2241 FAX 061-797-2579, e-mail: pw08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76명”을 “1,1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51명”을 “1,1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5명”을 “2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1,181</u>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145</u>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u>1,070</u>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176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151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5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u>1,181명</u> ----- -----. 1. ----- <u>1,152명</u> 2. ----- <u>29명</u>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76 1,181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0 1,145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65 1,07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광양시 공고 제2022-2485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9.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제안이유

○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1,176명→1,181명, 5명 증)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 정원 반영 등

- 2022년 교육파견 인력 결원보충 1명에 따른 정원 추가

○ 기능직 퇴직자 발생에 따른 자연감소 인원 직렬 조정

○ 기관별

(단위:명)

구 분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조 정	1,181	508	29	195	226	223
현 행	1,176	507	25	195	226	223
증 감	5	1	4	-	-	-

○ 직급별

(단위: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별정· 정무직	지도직	전문 경력관
조정	1,181	1	10	63	275	296	254	245	5	2	29	1
현행	1,176	1	10	63	274	292	254	245	5	2	29	1
증감	5	-	-	-	1	4	-	-	-	-	-	-

○ 직급별 · 직렬별 정원 조정

(단위:명)

구분	증 감	세 부 내 역			
합계	5	본청		의회사무국	
증감	5	1		4	
6급	1	1증	• 행정 1증	-	-
7급	4	1증	• 행정+전산 1증	4증	• 행정 2증 • 행정+환경 1증 • 행정+세무 1증
		1감	• 전화상담운영 1감	-	-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2. 12. 19.(월) ~ 12. 21.(수)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2241 FAX 061-797-2579, e-mail: pw08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9.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 제안이유

-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1,176명→1,181명, 5명 증)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 정원 반영 등
 - 2022년 교육파견 인력 결원보충 1명에 따른 정원 추가
- 기능직 퇴직자 발생에 따른 자연감소 인원 직렬 조정

○ 기관별

(단위:명)

구 분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조 정	1,181	508	29	195	226	223
현 행	1,176	507	25	195	226	223
증 감	5	1	4	-	-	-

○ 직급별

(단위: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별정· 정무직	지도직	전문 경력관
조정	1,181	1	10	63	275	296	254	245	5	2	29	1
현행	1,176	1	10	63	274	292	254	245	5	2	29	1
증감	5	-	-	-	1	4	-	-	-	-	-	-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단위:명)

구분	증 감	세 부 내 역			
합계	5	본청		의회사무국	
증감	5	1		4	
6급	1	1증	• 행정 1증	-	-
7급	4	1증	• 행정+전산 1증	4증	• 행정 2증 • 행정+환경 1증 • 행정+세무 1증
		1감	• 전화상담운영 1감	-	-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2. 12. 19.(월) ~ 12. 21.(수)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2241 FAX 061-797-2579, e-mail: pw08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